

202.6호

### 행정명령

####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OVID-19 비상 재난에 가장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신속하게 모든 물품, 서비스, 전문 인력, 자원봉사 인력을 소집하여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 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일부터 2020년 4월 17일 금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공무원법(Public Officer's Law) 제3조는 그러한 비상사태 기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상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능력을 고용하거나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법 제73조의 하위조항 I의 하위문단 (i)는 선언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뉴욕주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보유, 임명 또는 자원한 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법 제73조 하위문단 5는 선언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뉴욕주를 돕기 위해 기부 또는 출연을 촉진하는 주 공무원 또는 직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법 제73(8)조 제73조 하위문단 8 및 공무원법 제74조는 뉴욕주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임명 주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모든 기피 사항을 준수하는 한에 해당합니다.
- 제정법(Legislative Law) 제1-M항은 어떤 기관이 현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출처에서 어떤 양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시 중단되나, 그러한 기부는 주에 기부되고 대응 노력의 조성을 위해 주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한에 해당합니다.
-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제11 조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뉴욕주 비상 재해 대응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선언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는 주 기관의 노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재난 비상 상황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의거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일까지에 해당하는 다음 지침을 내립니다.

- 이는 3월 20일 오후 8시부터 발효됩니다. 주의 모든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는 최대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텔레커뮤팅 또는 재택근무 절차를 시행합니다. 각 고용주는 모든 작업 공간에서 대면 인력을 줄여 3월 20일 오후 8시까지 50% 줄여야 합니다. 모든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사업체 또는 단체에는 대면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및 실험실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운영, 공익사업, 통신, 공항 및 운송 인프라를 포함한 필수 인프라, 식품 가공 및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 제조, 식료품점 및 약국을 포함한 필수 소매점, 쓰레기 수거,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뉴스 미디어, 은행 및 관련 금융 기관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 경제적으로 불우한 인구에 대한 기본 필수품 제공자, 주택 또는 기타 필수 사업체의 건설, 안전, 위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서비스 공급업체, 물류 및 기술 지원, 보육 및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대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는 사업체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은 후 이 요청을 검토 및 승인하며, 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전부 유지하는 것이 주에 가장 혜택을 주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늦어도 2020년 3월 19일 오후 5시까지 어떤 사업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행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